

문서번호	도시계획과-10253
결재일자	2014.12.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한옥문화담당	도시계획과장	도시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상재	노상훈	이상수	김장수	김병환	12/30 김영배
협 조					
					정무보좌관 윤정배 주무관 최미경

- **성북동 선잠단지 · 앵두마을** -
한옥밀집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

2014. 12.

도 시 환 경 국
(도 시 계 획 과)

성북동 선잠단지 · 앵두마을

한옥밀집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

우리구 성북동 선잠단지, 앵두마을 일대가 사대문 밖 최초 한옥밀집 지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한옥에 대한 보전 및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2008.12.23 : 서울시 한옥선언
 - 한옥지원사업 대상지 확대 : 전통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
- 2009.05.28 : 서울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
 - ※ “한옥밀집지역”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·공고한 지역
- 2014.12.26 :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공고(서울시공고 제2014-2025호)

II 추진 경위



- 2013.04 ~ 12 :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
- 2014.02.24 : 성북동 한옥밀집지역지정 요청(→서울시)
- 2014.03.13 : 서울시 제4차 한옥위원회 심의
 -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결과를 서울시 한옥위원회 보고 요망
- 2014.04.03 :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
- 2014.05.22 : 서울시 제8차 한옥위원회 보고(심의 조건 이행 확인)
- 2014.09.30 :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관련 서울시 투·융자 심사 위원회
(총 사업비: 324억 원 적정 / 2015~2018년)
- 2014.12.23 :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공고 통보

III 지정 현황

□ 대상지 현황 (2014년 12월 기준)

위 치 (면적: m ²)	한옥	비한옥	계	한옥비율	비고
성북동 62-17호 (선잠단지 일대) (면적: 5,868m ²)	20동	24동	44동	45.4%	한옥지정구역
성북동1가 105-11호 (앵두마을) (면적 31,245m ²)	38동	131동	169동	22.5%	한옥유도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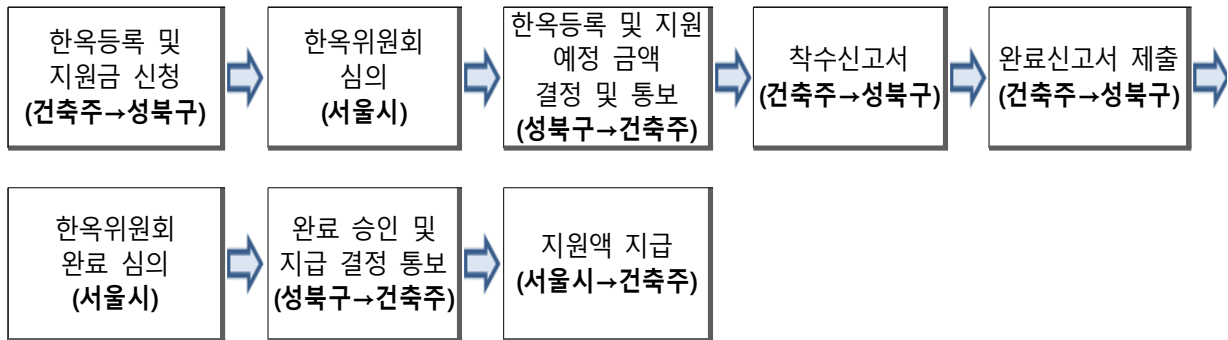
□ 위치도

구 분	성북동 62-17(선잠단지 일대)	성북동1가 105-11(앵두마을 일대)
한옥 현황도		

IV 지원 내용

구 분	지원 내용
전면 개보수	외관 공사비용의 2/3범위 안에서 최대 6천 만원 보조 내부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 만원 응자
한옥 신축	외관 공사비용의 2/3범위 안에서 최대 8천 만원 보조 내부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 만원 응자
지붕 등 부분 보수	서울시 지원 후 5년 경과 한옥 1천 만원 보조

V 지원 절차



※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 관련 절차 별도이행

VI 향후 계획

- 2015.01 ~ :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 홍보(언론보도, 플래카드 게첨)
주민 안내문 발송 및 관련 부서 통보 등
- 2015.01 ~ :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한옥 보조·용자비 지원(서울시)
- 2015.01 ~ :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추가 지정 요청 절차 이행

- 붙임: 1) 선잠단지, 앵두마을 일대 한옥 밀집지역 내 지원 사업 안내문 1부.
2) 플래카드 제작(안) 1부.
3) 서울시 공문 및 공고문 각 1부. 끝.